

10/24

인 권 지 방 보 원
제 1 형 사 부
법 의

사 권 86조 662. 법관 기피신청

피 고 인 권 인 속 (權 仁 淑)



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, 김상철, 박원순, 이돈명, 이상수, 조영택,
조준희, 홍성우, 황인철.

선 정 인 피고인 및 변호인들

주 문 이 사건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.

이 유 1. 신청 이유의 요지

신청인들의 당원 86고합 375. 공문서 변조등 피고 사건의

담당제판부(제판장 부장판사 윤규한, 판사 홍기종, 판사 김학모)에 대한 이 사

건 기피신청 이유의 요지는,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부친경찰서에 감금되어
 있던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 본국동으로부터 성고문을 당하여 같은 해 7. 3.
 위 본국동등을 고소하였고, 피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고영구의 3인도 같은
 달 5.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, 위 고소.고발을 접수한 인천지
 방경찰청은 같은 달 17. 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인의 고소 사실중
 인.폭행 부분만이 사실이고 「성적모욕 행위」부분은 사실이 아니며, 피고인
 의 성고문 주장은 그가 금전과영노선을 신봉 하는 행동 대원으로서 사실을 날
 조, 왜곡함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 시킬 의도로 행한 의식과 투정의 일환이
 라고 하였는바, 만약 위 발표 내용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성고문 주장이 허
 위라면 이는 피고인의 성행위 파렴치함, 범행 동기의 불순함, 범행후의 정
 황의 추악함등을 추단케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,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
 성고문 사실을 고소함에 대한 보복및 전상 은폐 수단의 일환으로 이 사건^V기

소를 한 사경이 엿보이므로 피고인의 성고문 주장의 진실 여부 및 이에 대한
 검찰의 수사과정을 밝히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
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,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위 사건의 정황
 에 관한 자료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신청한 위 동기동 등에 대한 검찰수사기
 록에 대한 검증, 위 동기동, 부천경찰서 형사인 이송기, 김희성에 대한 증언
 신청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 설명없이 기각하였으니 이는 재판부가 피고
 인의 성행, 남행동기동에 의하여 풀지 못한 예단을 갖고 위 성고문 사건에
 관한 영정당국의 온갖 노력에 협력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사
 건에 관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.

2. 판 단

이건 본안 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공판심리의
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본안 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

두 자백하였고, 이어 검사의 입증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사실 및 그 동기, 피고인의 성행, 가정환경등을 조사한 수사기록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그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며,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상에 관한 입증으로서 이견 피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동 피고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의 수비자의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문하였다는 경찰관인 문기동 등의 피의 사건의 검찰수사기록의 검종과 위 문기동 및 이종기, 김해성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자, 재판장은 위 변호인 신청의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.

그런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 조사의 한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처부의 관행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지만 당사자 소송주의가 강화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성격상 증거능력이 있고, 이미 조사된 증거와 중복되지 않고, 당사자의 공격방어에 필요

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한 모두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것인바, 이견에 있어

피고인은 이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검사가 그 변행사실과 경상에

관한 자료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할 하였을 뿐 아니

라,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. 7. 30.자로 그간의 수사과정의 경과에

관하여 판원서 형식으로 재판부가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되었고 공판영인본

에서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또다시 그 경상

이 관 계된다하여 신경한 위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증거결

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단정할수 없고, 가사 위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

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바로 불공평한 재판을 함우려가 있

다고 하여 재판부를 기피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숙단할 수도 없다 함것이다.

형사소송법 제296조, 형사소송법 규칙 제135조 제136조에 의하면 당사자는

변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 신청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구

제 판 사 년 제

판 사 년 중 판



판 사 유 제 판

등 본 이 다 1986 10 23
인 천 지 방 법 원

법원 사무관 유 광



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이외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

서 원심의 소송절차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합을 이유로 하여 그

사정을 구할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입장에서 생각하여도 단

지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

에 관한 좋지 못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

단정할수는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8조

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

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